

# 제327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1. 회 기 : 2024. 2. 21.(수)~2. 23.(금)(3일간)

## 2. 의사일정

일 시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2. 21.(수) 10:00	본회의 (1차)	개 회 식	본회의장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327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li> <li>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li> <li>3. 2023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li> <li>4. 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5. 2024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li> <li>6. 2024년도 중소기업 특례보증 수수료 출연금 동의안</li> <li>7. 동두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li> <li>8.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9. 동두천시 만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자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li> <li>10. 동두천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한 조례안</li> <li>11. 동두천시의회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ol>	
2. 22.(목) 10:00	본회의 (2차)	1. 조례안 등 심의	의원 회의실
2. 23.(금) 10:00	본회의 (3차)	1. 조례안 등 최종 의결	본회의장 (토론 및 의결)

2024. 2. 21.(수) 10:00

본회의장

# 5분 자유발언

- 제 327회 임시회 -



임현숙 의원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김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형덕 시장님, 그리고 행정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은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을 위한 활력 비타민!

언제나 시민 곁에서, 변함없는 열정으로, 한결같이 최선을 다하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임현숙입니다.

정월대보름을 곧 맞이하면서, 새 희망으로 시작된 갑진년이 본격적

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시민 모두가 활기차게 비상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관상(觀相)! 겉으로 드러나는 얼굴 생김새를 관상이라고 합니다. 관상이 과연 과학이냐, 미신이냐의 논란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특히 처음 만날 때 가장 먼저 보는 신체 부위가 바로 '얼굴'이라는 사실입니다. 단 3초 첫인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결정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시의원이 되기 전 40년 가까이, 미용사로서 손님들의 외모를 단장해 드린 경험과 관찰을 통해, 저는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물론 겉으로 보이는 모습보다 내면의 아름다움과 실속이 더 소중하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에서는, 바로 '얼굴'과 거기에서 받는 '첫인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 도시도, 우리 동두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과 고용률을 비롯한 여러 요소와 지표들이 도시브랜드와 가치를 좌우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도시, 우리 동두천의 '얼굴'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의 얼굴, 우리 동두천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동두천의 얼굴은, 바로 우리가 걸어서 다니는 '거리'입니다.

제9대 시의원이 되어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후로 줄곧, 본 의원이 고민하며 해답을 찾고자 했던 것이 바로, 동두천의 '얼굴'을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고 보기 좋게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단지 저 혼자만의 고민과 구상이 아니라, 만나는 시민 대다수가 이 점에 대한 문제의식과 소망을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도시 계획과 정책 방향은 늘어나는 차량의 효과적인 통제와 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들을 설치하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을 조성하고, 정체를 해소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로를 신설·확장하는 등, 거의 모든 도시 정책과 계획은 ‘자동차 중심’이었습니다.

도시 설계와 계획의 패러다임은 이미 바뀌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이고 우선입니다. 의원이 되고 난 이후, 국내·외 여러 선진도시를 둘러보면서, 본 의원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가 아닌 ‘사람’ 중심의 도시 환경 설계가 도시 경쟁력을 결정합니다. 도시가 걷기 좋게 아름다우면 자연스레 사람들은 모여듭니다. 유동 인구가 많아지면 관광과 지역경제도 살아날 것이

고, 정주 인구 또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구감소를 막으면서 동두천에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제, '아름다운 동두천 만들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대단위 택지를 조성하거나, 랜드마크가 될 고층 빌딩을 건축하거나,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보다 더 우리 일상생활에 가까우면서도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길이 바로 '걸고 싶은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우로'의 정비 상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3번 국도 의정부, 양주 방향에서 동두천으로 진입하여 광암동 놀자숲과 자연휴양림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동우로'는 동두천의 얼굴과 같은 길입니다. 하지만, 토사가 흘러내리고

보도가 훼손되어 있어 동두천을 찾는 이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행감에서의 지적에 따라 지금은 도로 정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비가 잘 마무리된다면 '동우로'를 지나는 방문객들에게 '동두천'은 더 예쁘고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또한, 구시가지 한가운데 위치하면서도 그동안 노후 가로수와 정비되지 못한 도로 및 보도 환경으로 인해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치던 '서울병원 사거리'가 새롭게 단장되었습니다. 이곳의 도로 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로과와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등의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과 머리를 맞댄 논의를 거쳐 개선 작업을 한 결과 지금의 모습으로 재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물론이고 이곳을 지나다니시는 모든 시민이 아름답게 확 달라진

거리 모습에 만족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박형덕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의정활동을 통해, 본 의원은 ‘사람이 살고 싶고, 찾고 싶  
은, 아름다운 동두천’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필  
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 준비한 끝에 바로 오  
늘 제327회 임시회에서 ‘동두천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한 조  
례안’을 대표로 발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동두천시의 일정 지역을 걷고 싶은 거리  
로 지정하여 깨끗하고 정돈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문화적 특색이 어  
우러진 경관을 만듦으로써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를 구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동우로’나 ‘서울병원 사거리’ 사례처럼 동두천의 거리 곳곳, 구체적으로는 6산 주변 임도와 도심지의 주요 거리들을 멋지고 아름답게 정비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이 걷고 싶어 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관심과 아이디어를 기울인다면 기존의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도시의 거리를 아름답게 조성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로써 동두천의 도시 이미지는 한층 업그레이드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동두천 곳곳의 거리를 걷고 싶은 아름다운 길로 조성하는 데 있어서, 특히 6산 임도를 정비하는 데 있어서, ‘걷고 싶은 거리’와 연계하여 시내·마을버스 노선을 조정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반드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은 동두천의 도시 이미지 개선으로 직결됩니다. 동두천의 거리들이 '걷기 좋은 거리'로 널리 알려지게 되면, 동두천에 관심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늘어나게 되고, 나아가서는 동두천을 삶의 터전으로 삼는 사람들도 생겨날 것입니다. 누구나가 걷고 싶은 아름다운 동두천을 만들면 동두천의 밝은 미래도 활짝 열릴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별지]

## 5분 자유발언 신청서

신청의원	임 현 속	서 명 또는 등록인장 날인	
선 거 구	나 선거구		
발언 일자	제3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4. 2. 21.)		
발 언 취 지	○ 「건고 싶은 아름다운 동두천 거리 조성」 제안		

붙임 5분 자유발언 내용 1부.

## 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4. 2. .

제 출 자 : 동 두 천 시 장

### □ 제안이유

- 「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시행(2023.4.1.) 이후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비효율과 불명확성을 제거하여 효율성 및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 □ 주요내용

가. 용어의 의미 구체화(안 제3조제1항)

- “지원 결정 시”의미 명시

나. 전입장려금 수령인 범위 정비(안 제4조제3항)

- 동두천사랑카드 수령인의 범위 확대(직계가족→가족)

다. 전입장려금 수령기간 설정(안 제4조제3항)

- 동두천사랑카드 수령기간 신설(수령통지일로부터 1년)

라.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 서식 수정(안 별지 제1호서식 앞면)

-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 서식 변경(연락처 추가)

마.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수정(안 별지 제1호서식 뒷면)

-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변경

개정조례안 : 불임

신·구조문대비표 : 불임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상황 : 해당없음

입법예고 : 2023. 12. 15. ~ 2024. 1. 5.(21일간) (의견 없음)

부서협의

○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 의견없음

○ 성별영향분석 평가 : 의견없음

도 관련부서 : 경기도 인구정책담당관

동두천시 조례 제 호

## 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까지”를 “시(신청자의 거주요건을 확인하고 지급 대상자를 확정 한 때)까지”로 한다.

제4조제3항 단서 중 “직계가족”을 “가족(「민법」 제77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수령기한은 지급통지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

(접수번호 :            )

신청 분야	<input type="checkbox"/> 전입장려금 <input type="checkbox"/> 직업군인 및 군무원 주거비 지원금 <input type="checkbox"/> 대학생 기숙사비(월세비) 지원금 ( <input type="checkbox"/> 기숙사비/ <input type="checkbox"/> 월세비) ※ 해당항목에 체크					
신청인	주소			관계		
	성명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		
<b>세 부 신 청 사 항</b>						
①전입장려금 (3개월 이상 거주)	관계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전입일
②직업군인 및 군무원 주거비 지원금	관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입일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③대학생 기숙사비(월세비) 지원금	관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입일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전입확인 (행정민원팀)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에 의거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원자와의 관계 :            )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동장 (인) 동두천시장 귀하						
1. 첨부서류 2. 사실과 다르게 기록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 3.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뒷면 참조)						

<첨부서류>

구분	제출서류
직업군인 및 군무원 주거비 지원금	1. 재직증명서 또는 직업군인 및 군무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납부확인서류(임차료납입증명서 등) 3. 통장사본
대학생 기숙사비(월세비) 지원금	1. 주민등록등초본 2. 재학증명서류(재학증명서 등) ※ 휴학기간 제외 3. 기숙사비 납입증명서 또는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납부확인서류 4. 통장사본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① 인구증가시책 지원 대상은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전입일로부터 지원 결정 시까지 계속해서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인구증가시책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② (생략)</p> <p>제4조(신청 및 지원절차 등)</p> <p>①·② (생략)</p> <p>③ 동장은 제1항제1호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를 검토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전입장려금(동두천사랑카드)을 신청인에게 지급 및 통지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세대원 또는 직계가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lt;후단 신설&gt;</p> <p>④ ~ ⑥ (생략)</p>	<p>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① ----- ----- ----- 시(신청자의 거주요건을 확인하고 지급 대상자를 확정할 때)까지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조(신청 및 지원절차 등)</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 가족(「민법」 제779조제1항)----- ----- 단, 수령기한은 지급통지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비용발생요인**

- 해당사항 없음

**II. 미첨부 근거 규정**

-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III.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 시행 시 별도의 비용이 발생되지 않음.

**IV. 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시행 2023. 4. 1.] [경기도동두천시조례 제2332호, 2023. 4. 1., 제정]

경기도 동두천시(기획감사담당관), 031-860-255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의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증가시책”이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인구증가를 위한 전입자에 대한 지원 사업을 말한다.
2. “전입자”란 전입 직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로 주소지를 이동한 사람을 말한다.
3. “전입 직업군인 및 군무원”이란 전입 직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로 주소지를 이동한 직업군인 또는 군무원을 말한다.
4. “전입대학생”이란 전입 직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로 주소지를 이동한 관내 대학교 재학중인 대학생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① 인구증가시책 지원 대상은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전입일로부터 지원 결정 시까지 계속해서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인구증가시책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입자: 전입장려금
2. 전입직업군인 및 군무원: 직업군인 및 군무원 주거비 지원금

3. 전입대학생: 대학생 기숙사비(월세비) 지원금

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지원내용과 세부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신청 및 지원절차 등)** ① 인구증가시책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1. 전입장려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인구증가 시책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 직업군인 및 군무원 주거비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3.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학교의 장은 신청서류와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학기 내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일괄 제출하여야 한다.

4. 대학생 월세비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별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계가족이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대리신청 할 수 있다.

③ 동장은 제1항제1호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를 검토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전입장려금(동두천 사랑카드)을 신청인에게 지급 및 통지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세대원 또는 직계가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동장은 전입자 사후 관리를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접수 및 지원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인구증가 시책 지원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에 작성하여 사후 관리하며 그 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동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 기재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 및 관리대장을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사항을 결정 후 그 달 20일까지 신청인과 해당 동장에게 지급 및 통지하고 지원 관리대장을 사후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한다.

**제6조(인구증가시책 추진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인구증가시책을 심의·조정하거나 추진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두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에 따른 동두천시 인구정책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구증가시책에 관한 협의 및 추진
2. 인구증가시책 및 추진과제 발굴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인구증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증가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예산확보 및 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인구증가시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23. 4. 1. 조례 제2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4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4. 2. .  
제출자 : 동두천시청

□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업을 추가 반영한 2024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종합운동장 실내 테니스장 건립 건(문화체육과) : 취득
- 환경사업소 실내 테니스장 건립 건(문화체육과) : 취득
- 환경사업소 통합 사무실 건축 건(환경사업소) : 취득
- 학교법인 청룡재단 부지 매입(환매) 건(회계과) : 취득

구분	(당초)	(변경)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024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합계(면적/금액)	914,804㎡ / 14,184백만 원	925,860㎡(증 11,056) / 20,283백만 원(증 6,099)
종합운동장 실내 테니스장 건립 (문화체육과)	-	[취득] : 건물(신규 추가) · 면적 : 2,200㎡ · 금액 : 2,400백만 원
환경사업소 실내 테니스장 건립 (문화체육과)	-	[취득] : 건물(신규 추가) · 면적 : 1,260㎡ · 금액 : 1,400백만 원
환경사업소 통합 사무실 건축 (환경사업소)	-	[취득] : 건물(신규 추가) · 면적 : 400㎡ · 금액 : 1,949백만 원
학교법인 청룡재단 부지 매입(환매) (회계과)	-	[취득] : 토지(신규 추가) · 면적 : 7,196㎡ · 금액 : 350백만 원

## 2024년도 수시 제1차 관리계획서(총괄표)

(단위 : m<sup>2</sup>, 백만 원)

구 분		당초(취득·처분)			변경(취득·처분)			증감			비고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취 득	계	토지	4	914,804	14,184	5	922,000	14,534	1	7,196	350	
		건물				3	3,860	5,749	3	3,860	5,749	
		기타										
	1.매 입	토지	4	871,664	13,364	5	878,860	13,714	1	7,196	350	신규 취득
		건물										
		기타										
	2.교 환 취 득	토지										
		건물										
		기타										
	3.기 타 취 득	토지	-	43,140	820	-	43,140	820				
		건물				3	3,860	5,749	3	3,860	5,749	신축
		기타										
처 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교 환 처 분	토지										
		건물										
		기타										
	7.기 타 처 분	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계											
	토지											
	건물											
	기타											

##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m<sup>2</sup>, 백만 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기준 가격	취득 시기	취득 목적	소관 부서 (팀)	계약 방법
	종류	소재지	면적					
계	토지	5필지	7,196	350	-	-	-	-
	건물	3동	3,860	5,749	-	-	-	-
1	건물	생연동 80 외 1필지	2,200	2,400	24. 8.	종합운동장 실내테니스장 조성	문화체육과 (체육시설팀)	신축 (일반입찰)
2	건물	상봉암동 173 외 1필지	1,260	1,400	24. 8.	환경사업소 실내테니스장 조성		
3	건물	상봉암동 173	400	1,949	2024	하수처리장 통합 사무실 신축	환경사업소 (환경시설 관리팀)	신축 (일반입찰)
4	토지	생연동 57-10 외 4 필지	7,196	350	24. 2.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취소에 따른 공유재산 반환	회계과 (재산관리팀)	환매

## 처분대상 재산목록

(단위 : m<sup>2</sup>, 백만 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기준 가격	처분시기	처분사유	소관 부서	비고
	구분	소재지	면적					
계	-	해	당	없	음	-		
	-	해	당	없	음	-		

□ 종합운동장 실내 테니스장 건립 : 문화체육과

가. 사업개요

- 소재지 : 생연동 80번지 외 1필지
- 사업 목적 및 용도
  - 목적 :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화에 따른 이용자들의 불편민원 및 개선요구 증가. 시설물 개보수를 통한 체육복지 실현 및 지역생활체육 활성화.
  - 용도 : 실내 테니스장 조성
- 사업기간 : 2024. 4. ~ 2024. 8.
- 소요예산
  - 총사업비 : 2,400백만 원
  - 재원조달 : 체육진흥기금(720), 특조금(400), 시비(1,280)
  - 재원별 사업비 : 용역비(30), 토목공사비(550), 막구조물 설치(1,820)
- 사업규모
  - 취득 : 건물 1동(연면적 2,200㎡, 1층 건물)
- 기준가격 명세
  - 취득 : 건물 2,400백만 원
- 계약방법 : 일반입찰을 통한 신축

나. 추진경위

- 2023. 9. : 2024년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공모 선정(체육진흥기금)

다. 취득 및 처분 대상 재산

○ 취득대상 재산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백만 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기준 가격	취득 시기	취득 목적	소관 부서	계약방법
	종류	소재지	면적					
계	토지	-	-	-	-	-	-	-
	건물	1동	2,200	2,400	-	-	-	-
1	건물	생연동 80 외 1필지	2,200	2,400	2024. 8.	실내테니스장 조성	문화 체육과	신축 (일반입찰)

○ 처분대상 재산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sup>2</sup>, 백만 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기준가격	처분 시기	처분 목적	소관 부서	계약 방법
	종류	소재지	면적					
			해	당	없	음		

라. 위치도 및 현황사진

위치도



현황 사진



□ 환경사업소 실내 테니스장 건립 : 문화체육과

가. 사업개요

- 소재지 : 상봉암동 173번지 외 1필지
- 사업 목적 및 용도
  - 목적 : 노후된 테니스장의 시설물 개보수를 통하여 체육시설 안전성 확보 및 지역생활 체육 활성화로 시민들의 체육복지 실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용도 : 실내 테니스장 조성
- 사업기간 : 2024. 4. ~ 2024. 8.
- 소요예산
  - 총사업비 : 1,400백만 원
  - 재원조달 : 도비(420), 시비(980)
  - 재원별 사업비 : 용역(20), 토목공사비(80), 막구조물 설치(1,300)
- 사업규모
  - 취득 : 건물 1동(연면적 1,260㎡, 1층 건물)
- 기준가격 명세
  - 취득 : 건물 1,400백만 원
- 계약방법 : 일반입찰을 통한 신축

나. 추진경위

- 2023. 11. : 2024년 체육진흥시설 공모사업 공모 선정(도비)

다. 취득 및 처분 대상 재산

○ 취득대상 재산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백만 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기준가격	취득 시기	취득 목적	소관 부서	계약방법
	종류	소재지	면적					
계	토지	-	-	-	-	-	-	-
	건물	1동	1,260	1,400	-	-	-	-
1	건물	상봉암동 173 외 1필지	1,260	1,400	2024. 8.	실내테니스장 조성	문화 체육과	신축 (일반입찰)

○ 처분대상 재산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sup>2</sup>, 백만 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기준가격	처분 시기	처분 목적	소관 부서	계약 방법
	종류	소재지	면적					
			해	당	없	음		

라. 위치도 및 현황사진



□ 환경사업소 통합 사무실 건축 : 환경사업소

가. 사업개요

- 소재지 : 동두천시 상봉암동 173
- 사업 목적 및 용도 : 하수처리장 통합 사무실 신축
- 사업기간 : 2023. 9. ~ 2025.
- 소요예산 : 1,949백만 원
  - 총사업비 : 1,949백만 원
  - 재원조달 : 지방비(시비 100%)
  - 재원별 사업비 : 건축비(1,160), 설계비(50), 부대공사비(540), 감리비(15), 부대비(7), 예비비(177)
- 사업규모
  - 취득 : 건물 1동(연면적 400㎡, 1층 건물)
- 기준가격 명세
  - 취득 : 건물 1,949백만 원
- 계약방법 : 일반입찰을 통한 신축

나. 추진경위

- 2023. 9. : 환경사업소 통합사무실 신축 계획 수립(환경사업소-14838)

다. 취득 및 처분 대상 재산

○ 취득대상 재산

회계명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단위 : ㎡, 백만 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기준가격	취득 시기	취득 목적	소관 부서	계약 방법
	종류	소재지	면적					
계	토지	-	-	-	-	-	-	-
	건물	상봉암동 173	400	1,949	-	-	-	-
1	건물	상봉암동 173	400	1,949	2025	통합 관리 사무실 신축	환경사업소	신축 (일반입찰)

○ 처분대상 재산

회계명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단위 : m<sup>2</sup>, 백만 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기준가격	처분 시기	처분 목적	소관 부서	계약 방법
	종류	소재지	면적					
			해	당	없	음		

라. 위치도 및 현황사진

위치도



현황 사진



## □ 학교법인 청룡재단 부지 매입(환매) : 회계과

### 가. 사업개요

- 소재지 : 동두천시 생연동 57-10 외 4필지
- 사업 목적(용도)
  - 청룡학원 학교시설사업 시행 계획 취소(붙임1,2\*)와 관련, 학교법인 청룡학원의 토지 매입 검토 요청에 따라 생연동 57-10외 4필지에 대한 매입을 추진하고자 함.
- 사업기간 : 2024. 2.
- 소요예산 : 745백만 원
  - 총사업비 : 745백만 원
  - 재원조달 : 지방비(시비 100%)
  - 재원별 사업비 : 토지 매입비(742), 등기수수료 등(3)
- 사업규모
  - 취득 : 토지 총 7,196㎡(생연동 57-10 외 4필지)
- 기준가격 명세
  - 취득 : 토지 350백만 원(2024년 공시지가 기준)
- 계약방법 : 공유재산 매매계약서(붙임3\*) 환매 조건에 따라 계약대금(825백만 원)의 10%를 제외한 금액으로 매입

### 나. 추진경위

- 2013. 12. :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도로) 결정
- 2015. 3. : 공유재산(생연동 57-10 외 4필지) 매매계약 체결
- 2023. 5. :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도로)결정(폐지) 및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취소)
- 2023. 7. : 학교법인 청룡학원 부지 환매 계획 수립(회계과-15885)

## 다. 취득 및 처분 대상 재산

### ○ 취득대상 재산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sup>2</sup>, 백만 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기준가격	취득 시기	취득 목적	소관 부서	계약 방법
	종류	소재지	면적					
계	토지	5필지	7,196	350	-	-	-	-
	건물	-	-	-	-	-	-	-
1	토지	생연동 57-10	127	6.2	2024. 2.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취소에 따른 공유재산 반환	회계과 (반환 후, 原재산본관으로 재산 이관)	환매
2	토지	생연동 57-11	98	4.8				
3	토지	생연동 산73-2	2,409	196				
4	토지	생연동 산78-5	3,530	109				
5	토지	생연동 산79-3	1,032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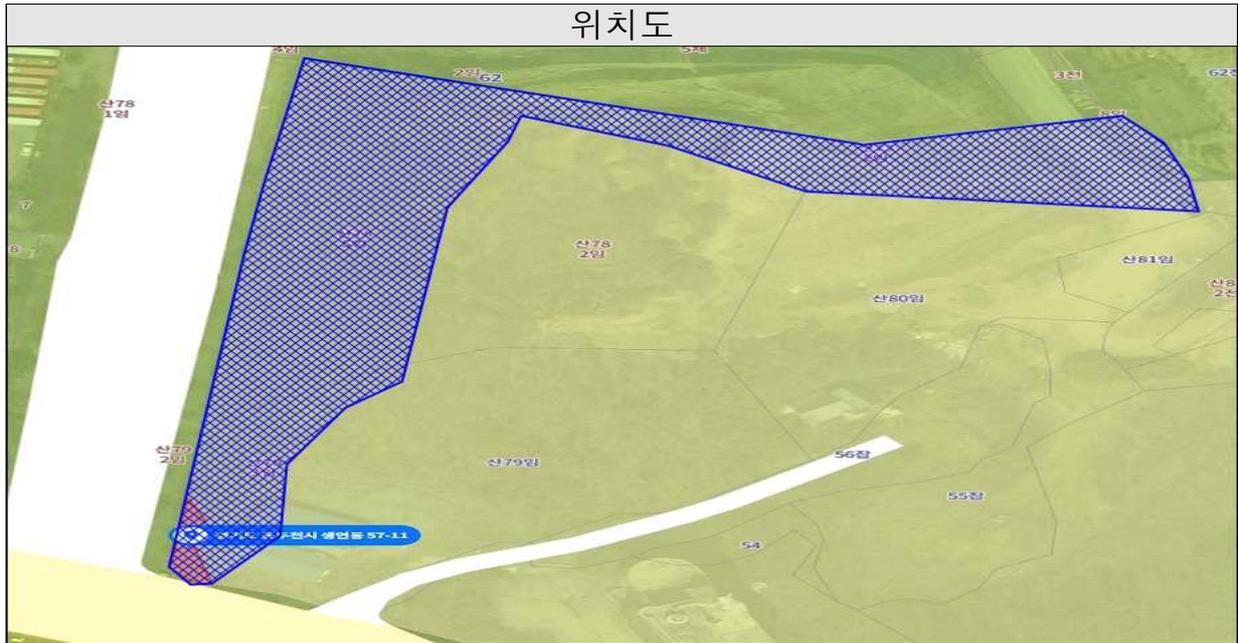
### ○ 처분대상 재산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sup>2</sup>, 백만 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기준가격	처분 시기	처분 목적	소관 부서	계약 방법
	종류	소재지	면적					
			해	당	없	음		

라. 위치도 및 현황사진



# 2024년 「중소기업 특례보증 수수료」 출연금

◆ 중소기업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

## □ 제안이유

- 중소기업 특례보증에 대한 보증 수수료를 지원하여 지역경제 위축을 완화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0,000천 원을 출연하고자 함.

## □ 근거법령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

##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2024년 중소기업 특례보증 신청 업체
- 지원내용 : 신규 접수된 특례보증 수수료 1% 이내 지원(최초 1년분)  
※ 특례보증 수수료율 : 대출금의 1~2% 이내
- 지원용도 : 경영안정지원

## □ 소요예산

(단위 : 천 원)

구 분	출자·출연기관	2024년 예산액	2023년 예산액	증감액	비 고 (산출근거)
출연금	경기신용보증재단	20,000	20,000	-	

□ **관계법령발췌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5.1.> <개정 2005.10.31.>

1. 도 및 시·군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3. 금융기관의 출연금
4. 기업의 출연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개정 2012.5.11.>
6. 보증료 등의 그 밖의 수입 <개정 2012.5.11.>

## 동두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4. 2. .  
제 출 자 : 동 두 천 시 장

### 제정이유

- 동두천시 지역먹거리 종합추진계획(2023~2027)에 의한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하고 먹거리 기본권보장을 실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나. 조례의 정의(안 제2조)
- 다. 시장의 책무(안 제4조)
- 라. 먹거리종합계획 수립(안 제6조)
- 마. 먹거리위원회 설치(안 제8조)

## 동두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하고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연령, 성별,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지역 먹거리”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및 경기도에서 생산·가공된 농·축·수산물을 동두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공급되는 식품을 말한다.
3.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를 시에 우선 공급하여 소비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4. “민·관협력체계 구축”이란 먹거리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시, 관계기관 및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력체계를 설치하고 필요한 권한 부여

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은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먹거리가 부족한 시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우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먹거리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매 5년마다 동두천시 먹거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

2.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취약계층, 어린이·학생, 임산부 및 영유아 등 영양학적 관리가

필요한 시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에 관한 사항

나. 지역 먹거리의 품질 향상, 안전성 확보, 다양성 확보 등에 관한 사항

다. 건강한 식문화 형성에 관한 사항

라. 차별이 없는 먹거리 보장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지역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먹거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먹거리 기본권 보장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먹거리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먹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먹거리 정책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건강한 식문화 정착과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

1. 먹거리 기본권 관련 업무 담당 국장·과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동두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동두천시의회 의원

나.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먹거리 기본권 업무 담당자

다. 먹거리 기본권 관련 대학 및 연구소 종사자

라. 생산자단체·소비자단체 및 복지 분야 관련 단체 종사자

마. 지역 먹거리 농식품 유통분야 단체 및 사회적경제 조직 종사자

바. 동두천시 사회복지·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

사.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학교급식담당 영양(교)사

아. 그 밖에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현과 먹거리보장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며 먹거리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① 시장은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 및 공청회·세미나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약칭 : 농업식품기본법)****제3장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수립·시행 <개정 2015. 6. 22.>****제2절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 등 <개정 2015. 6. 22., 2017. 3. 21.>**

**제23조의3(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역먹거리 관련 생산·소비·유통·폐기 현황 및 분석
3.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의 지역 내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
4.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의 생산에 관한 사항
5. 지역 중소농 조직화 및 식품가공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6.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에 관한 사항
7. 도농상생에 관한 사항
8.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먹거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지역먹거리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지역농산물 생산·가공·유통의 체계적 관리
2. 농산물 생산자 조직화 및 안전성 관리
3. 먹거리 관련 교육 및 홍보 지원
4. 먹거리 관련 거버넌스 운영·지원
5. 그 밖에 지역먹거리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④ 제2항에 따른 지역먹거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제3항에 따른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국가는 지역먹거리계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 4.]

##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정) 2019-01-07 조례 제 6006호

(일부개정) 2023-04-11 조례 제 7621호

(일부개정) 2023-07-18 조례 제 7667호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먹거리 순환 체계 확립을 통한 경기도민의 먹거리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11.>

제2조(기본원칙)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먹거리 보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한다.

1. 도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먹거리 보장을 기본권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2. 도의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은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3. 도는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해 도민의 참여 및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실천하여야 한다.
4.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도 소속 기관의 장은 각종 정책 수립 시 먹거리계획과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3.4.11.>]

[전문개정 2023.4.11.]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 성별,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개인의 취향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지역먹거리”란 도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도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제조·가공된 식

품을 말한다. <개정 2023.4.11.>

3. “지역먹거리 순환체계”란 지역먹거리가 도 또는 생산·제조·가공한 해당 시·군에 우선 공급되어 소비되도록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개정2023.4.11.>
4. “민관협치체계 구축”이란 먹거리 문제 해결을 위하여 도, 경기도교육청 및 시·군과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의체계를 설치하고 필요한 권한 부여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에서 이동 <2023.4.11.>]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지역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3.4.11.>] <개정 2023.4.11.>

② 도지사는 도민의 먹거리가 부족한 도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우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관련 국제행사 개최 등 외국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및 단체 등과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3.4.11.>]

④ 도지사는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항에서 이동 <2023.4.11.>] <개정 2023.4.11.>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먹거리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에 따른 경기도 먹거리계획(이하 “먹거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② 먹거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4.11.>

1.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개정2023.4.11.>

가. 삭제 <2023.4.11.>

나. 삭제 <2023.4.11.>

다. 삭제 <2023.4.11.>

라. 삭제 <2023.4.11.>

마. 삭제 <2023.4.11.>

바. 삭제 <2023.4.11.>

2. 직전 먹거리계획에 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3.4.11.]

가. 학교, 공공시설 및 공공기관에 지역 먹거리 공급 확대에 관한 사항

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도시와 농어촌 교류,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농업 및 「경기도 공유농업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유농업활성화 등 도농상생 확대에 관한 사항

다. 지역 먹거리를 활용한 식품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라. 식품 폐기물 축소 및 재활용, 기후변화 대응, 환경부하 감소 등 환경 친화적 농업 확대에 관한 사항

마.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물류·유통 지원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

3. 지역먹거리의 생산·소비·유통 등 현황 및 분석에 관한 사항[신설 2023.4.11.]

4. 지역먹거리의 지역 내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 [신설 2023.4.11.]

5. 지역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개정 2023.4.11.>

가. 학교, 공공시설 및 공공기관에 지역먹거리 공급 확대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3.4.11.]

나. 지역먹거리를 활용한 식품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3.4.11.]

다. 지역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물류·유통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11.>

라. 삭제 <2023.4.11.>

[제3호에서 이동 <2023.4.11.>]

6.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먹거리의 생산에 관한 사항 [신설 2023.4.11.]

가. 먹거리 다양성 확보에 관한 사항

나. 지역먹거리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다. 식품 폐기물 축소 및 재활용, 기후변화 대응, 환경부하 감소 등 환경친화적 농업 확대에 관한 사항

7. 지역먹거리 중소농 조직화 및 식품가공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23.4.11.]
8. 취약계층, 어린이·학생, 임산부 및 영유아 등 영양학적 관리가 필요한 도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4.11.]
9. 성·연령,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이 없는 먹거리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4.11.]
10.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도시와 농어촌 교류,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농업 및 「경기도 공유농업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유농업활성화 등 도농상생 확대에 관한 사항 [신설 2023.4.11.]
11. 건강한 식문화 형성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3.4.11.]
12. 민관협치체계 구축을 위한 사항 [신설 2023.4.11.]
13. 그 밖에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3.4.11.]

[제목개정 2023.4.11.]

제7조(전담부서의 설치·지정) 도지사는 먹거리계획의 시행을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4.11.]

제7조의2(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지역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물류·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을 위한 생산·가공·유통 등 관리
2. 지역먹거리 생산자 조직화 및 안전성 관리
3. 생애주기, 성별 등 맞춤형 먹거리 공급 정책 마련
4. 통합적 먹거리 정책 추진체계 마련
5. 공동체 기반의 먹거리 산업 생태계 조성
6. 음식물 쓰레기 감축 및 자원화
7. 식교육 인프라 확충 및 먹거리 홍보 지원

8.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생산자 상생 기반 마련

9. 먹거리 위원회를 통한 민관협치체계 구축 및 활성화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센터를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른 경기도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4.11.]

제7조의3(실태조사) 도지사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과 지역먹거리 이용 실태를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4.11.]

제8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단체·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제9조(먹거리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먹거리계획 시행을 위한 민관협치체계 마련을 위해 경기도 먹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4.1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전문개정 2023.4.11.]

1. 먹거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11.>
2. 먹거리정책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23.4.11.]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도지사, 경기도교육감 및 제3항제2호라목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도 먹거리 기본권 관련 업무 담당 실·국장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가.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나. 경기도교육청 먹거리 기본권 업무 담당 실·국장

다.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추천한 도 경기도 내 시장 또는 군수  
[전문개정 2023.4.11.]

라. 먹거리 기본권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도민과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제3항제2호라목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1호 및 제3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제3항제2호라목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공동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공동위원장 중 1명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도 소속 공무원 및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7.18.>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운영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이 각 위원회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담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 본인 또는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해제)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2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7667호, 2023.7.18.>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1] ~ [82] 생략

[83]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84] ~ [255] 생략

**붙임 3**

**경기도 내 시·군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지자체	자치법규명	제·개정일자	비고
총계	27개			
1	경기도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2019.01.07.	
2	가평군	가평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2021.09.29.	
3	고양시	고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2019.11.08.	
4	광명시	광명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2019.12.20.	
5	광주시	광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2023.12.11.	
6	구리시	구리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2020.03.05.	
7	군포시	군포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2023.12.12.	
8	김포시	김포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2019.12.31.	
9	남양주시	남양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2023.11.09.	
10	부천시	부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2021.10.05.	
11	성남시	성남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2023.10.10.	
12	수원시	수원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2021.07.08.	
13	시흥시	시흥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2020.02.22.	
14	안산시	안산시 먹거리계획 기본 조례	2022.12.30.	
15	안성시	안성시 안전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2020.03.06.	
16	안양시	안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2020.05.18.	
17	연천군	연천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2023.12.19.	
18	여주시	여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2020.04.20.	
19	오산시	오산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2023.07.17.	
20	용인시	용인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2021.01.08.	
21	의왕시	의왕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2023.06.30.	
22	의정부시	의정부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2022.12.29.	
23	이천시	이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2021.03.22.	
24	파주시	파주시 안심 먹거리 기본 조례	2020.09.25.	
25	평택시	평택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2021.11.03.	
26	포천시	포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2023.09.27.	
27	화성시	화성시 먹거리 기본 조례	2020.01.07.	

##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4. 2. .

제 출 자 : 동 두 천 시 장

### □ 제안이유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금을 재원으로 기탁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장학생을 선발하는 지정기탁사업을 기금의 용도에 추가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기금 조성 재원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 포함 (안 제3조제3호)
- 나. 기금의 용도에 지정기탁에 따른 장학사업 포함 (안 제4조제1항 제5호)
- 다. 지정기탁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의2)

동두천시 조례 제 호

##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인 또는 개인 등(이하 “기탁자”라 한다)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탁하는 기부금품

제4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탁자가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장학사업 외에 장학생 선발 대상 및 기준 등을 따로 정하여 금전 등을 시에 기탁하는 경우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지정기탁장학생의 선발)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학생은 기탁자가 정하는 선발 대상 및 기준 등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선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기금의 조성) 적립기금 조성액은 250억원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p>1. 2. (생략)</p> <p><u>&lt;신설&gt;</u></p> <p>3. (생략)</p> <p>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의 장학사업에 사용한다.</p> <p>1. ~ 4. (생략)</p> <p><u>&lt;신설&gt;</u></p>	<p>제3조(기금의 조성)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u>법인 또는 개인 등(이하 “기탁자”라 한다)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탁하는 기부금품</u></p> <p>4. (현행 제3호와 같음)</p> <p>제4조(기금의 용도) ①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탁자가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장학사업 외에 장학생 선발 대상 및 기준 등을 따로 정하여 금전 등을 시에 기탁하</u></p>

② (생략)

<신설>

는 경우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지정기탁장학생의 선발)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학

생은 기탁자가 정하는 선발 대

상 및 기준 등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선발한다.

**붙임 1**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동두천시 애항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비용발생요인**

- 해당사항 없음

**II. 미첨부 근거 규정**

-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III.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 시행 시 별도의 비용이 발생되지 않음.

**IV. 작성자 : 평생교육원장 권영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기부금품법 )**

[시행 2023. 1. 1.] [법률 제18490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① <생략>**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생략>
3. <생략>

③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3. 8. 16.>

1. <생략>
2. <생략>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349호, 2020. 12. 31., 타법개정]

**제14조(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①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행정 목적을 수행하거나 해당 법인·단체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기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기탁서를 기탁하려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의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5. 17.] [경기도동두천시조례 제2355호, 2023. 5. 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우수한 학생에게 내 고장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30., 2020. 3. 1.>

**제2조(기금의 설치)**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우수한 학생에게 내고장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5. 9. 30., 2016. 11. 18., 2018. 9. 3., 2020. 3. 1.>

**제3조(기금의 조성)** 적립기금 조성액은 250억원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5. 9. 30., 2012. 1. 13., 2020. 3. 1., 2023. 5. 17.>

1. 일반회계 출연금 <개정 2005. 9. 30., 2021. 11. 22.>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6. 11. 18.>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의 장학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05. 9. 30., 2016. 4. 11.>

1.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기능, 예능, 체육부문에서 지역의 명예를 드높인 학생 <신설 2005. 9. 30.>
2. 삭제 <2020. 3. 1.>
3.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가구(이하 “다자녀가구”라 한다)의 둘째아부터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 <신설 2018. 9. 3.><개정 2022. 9. 21.>
4. 소속 학교 인근에서 기숙사 또는 월세 거주하는 대학생의 주거비 지원 <신설 2023. 5. 17.>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06. 11. 6., 2020. 10. 8.>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④ 제2조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6조(장학생의 선발대상)** ① 장학생은 선발계획 공고일 현재 관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다만, 관내 초·중·고등학교 졸업자와 장기거주자를 우대하여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05. 9. 30., 2016. 4. 11., 2017. 6. 12., 2023. 5. 17.>

1. 애향장학생 <개정 2005. 9. 30.>

가. 삭제 <2020. 3. 1.>

나. 국내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직전학년 전과목 평균 평점 3.00 이상이고 D학점 또는 F학점이 없는 학생. 다만, 신입생인 경우에는 고등학교 3학년 내신 전과목 평균 등급이 4등급 이내인 학생. <신설 2005. 9. 30.> <개정 2006. 2. 14., 2016. 4. 11., 2020. 3. 1., 2023. 5. 17.>

다. 그 밖에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선발대상으로 심의된 사람. <신설 2005. 9. 30.> <개정 2016. 11. 18., 2018. 9. 3., 2020. 3. 1.>

2. 삭 제 <2020. 3. 1.>

3. 삭 제 <2005. 9. 30.>

4. 다자녀장학생: 다자녀가구의 둘째아부터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 <개정 2022. 9. 2 1.>

②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학생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 9. 30., 2012. 1. 13., 2017. 6. 12., 2020. 3. 1., 2023. 5. 17.>

1. 삭 제 <2004. 4. 19.>

2. 예술·체육·기능·문학 등에 재능이 뛰어나 최근 1년 이내에 광역자치단체 단위 이상의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학생 또는 권위있는 국제대회에 입상하거나 국가대표에 선발되는 등 지역의 명예를 드높인 학생 <개정 2012. 1. 13.>

3. 관내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직전학년 전 과목 평균 평점 3.0 이상이고 D학점 또는 F학점이 없는 학생 <신설 2017. 6. 12.>

③ 선발계획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부모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기숙사에 입사하거나 소속 학교 인근 주택에서 월세로 거주하는 국내 대학교 재학생을 주거비 지원 장학생으로 선발할 수 있다. 다만, 관내 초·중·고등학교 졸업자와 장기거

주자를 우대하여 선발할 수 있다. <신설 2023. 5. 17.>

**제7조(장학생의 선발)**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장학생 선발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6. 4. 11.] [개정 2018. 9. 3., 2020. 3. 1.]

**제8조(장학금의 지급)**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연도에 애향장학생과 주거비 지원 장학생으로 동시 선발될 경우 둘 중 지급 금액이 큰 장학금만 지급한다. <개정 2023. 5. 17.>

1. 다자녀장학생 : 연 50만원 <개정 2020. 3. 1.>
2. 전문대학 애향장학생 : 연 200만원
3. 4년제 대학 이상 애향장학생 : 연 350만원
4. 삭제 <2020. 3. 1.>
5. 주거비 지원 장학생 : 연 200만원 <신설 2023. 5. 17.>

**제9조(장학금의 지급중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학업성적이 제6조의 자격수준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 <개정 2018. 9. 3., 2020. 3. 1.>
2. 장학생이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 하였을 경우 <개정 2016. 11. 18.>
3. 장학생이 다른 시·군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개정 2016. 11. 18., 2020. 3. 1.>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관련 전문가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4. 11., 2016. 11. 18.>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 1. 13.>

1. 기획감사담당관, 교육지원업무 부서의 장(당연직) <개정 2003. 5. 1., 2006. 12. 8., 2010. 4. 26., 2012. 1. 13., 2015. 5. 2., 2016. 4. 11., 2018. 9. 3.>
2. 동두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2명, 관할지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위촉직) <개정 2010. 4. 26., 2016. 11. 18., 2017. 6. 12.>
3. 그 밖에 장학사업과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위촉직) <개정 2016. 11. 18.>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

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11. 18., 2018. 9. 3.>

**제11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장학생선발안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6. 11. 18.>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개정 2016. 11. 1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6. 11. 18.>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교육지원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03. 5. 1., 2005. 9. 30., 2010. 4. 26., 2012. 1. 13., 2018. 9. 3.>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동두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18.>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3. 1.>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6. 11. 18.>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5. 1.>

**제15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교육지원업무 부서의 장 <개정 2003. 5. 1., 2006. 12. 8., 2010. 4. 26., 2012. 1. 13., 2018. 9. 3.>
2. 기금출납원 : 교육지원업무 담당 <개정 2003. 5. 1., 2005. 9. 30., 2010. 4. 26., 2012. 1. 13., 2018. 9. 3.>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5. 1.>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 6. 30.>

**제18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 11. 22.>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중전 18조에서 이동]

동두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의원: 황주룡 의원)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4. 2.  
발 의 자 : 김승호,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 개정이유

-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 특이민원 대응 및 계획 수립(안 제5조)
- 신고 및 보호 의무(안 제6조)

- 지원 사항 및 지원 방법(안 제7조~제8조)
- 지원신청 및 불이익 조치 금지(안 제9조)
- 안전한 근무 환경 마련 등(안 제10조)
-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등(안 제11조)
- 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12조~제13조)
- 시행규칙(안 제14조)

개정조례안: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없음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청원경찰법」 제2조

참고사항: 붙임

- 현행조례
- 경기도 및 경기도 내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황

동두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동두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으로 인한 신체  
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동두  
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

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동두천시 소속 공무원

2. 공무원 근로자

3. 기간제 근로자

4.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5. 그 밖에 민원인을 안내·응대하거나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② “특이민원”이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을 상대로 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성희롱, 외모·신체·가족 비하 등의 인격모독

3. 상해 협박, 직접 욕설, 혼잣말 욕설 등의 폭언

4. 폭력, 기물파손, 주변 민원인 위협 등 점거 및 폭행 행위

5. 흉기·인화물 등 위험물 소지 및 신변 위협 행위

6. 정당한 사유 없이 장시간 통화로 다른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행위

7. 정당하지 않은 동일·유사 민원을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8. 그 밖에 위법·부당한 사항을 요구하는 행위

③ “비상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기물파손 등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특이민원인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 체계를 말한다.

④ “전담대응팀”이란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따른 고소·고발·손해배

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전담하는 대응부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

·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특이민원 대응 및 계획 수립) ① 시장은 특이민원 피해를 입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대응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특이민원 발생 및 대응 현황 등 실태조사
2. 민원담당공무원 근무 시 안전 확보 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대응 계획 수립 과정에 민원 업무 담당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 및 보호 의무) ① 민원담당공무원이 소속된 부서의 장은 특이민원 발생 시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민원인으로부터 피해 민원담당공무원 분리 및 충분한 휴식 시간 보장
2. 업무의 일시적 중단이나 변경

3. 시장에게 특이민원 발생 현황 보고

4. 비상대응팀 즉시 운영

5. 해당 민원인에 대한 법적조치 사전 경고

6. 그 밖에 피해를 입은 민원담당공무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② 민원담당공무원은 특이민원이 발생하였거나, 이를 목격한 경우 즉시 소속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특이민원을 보고받은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고소·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항) ① 시장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담당공무원이 입은 민원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이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및 공간

4.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

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조치

7.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 확충

8.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지원 방법) ①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지원신청 및 불이익 조치 금지) ①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은 별지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특이민원 피해 신고 또는 지원신청을 이유로 해당 민원담당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한 근무 환경 마련 등) ①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장비 등의 확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CCTV·비상벨·자동 녹음 전화 설치
2.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팀의 구성·운영
3. 민원창구의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4.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음성 안내
5. 휴대용 영상 및 음성기록 장비 등
6.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

② 시장은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 및 민원담당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

을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11조(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등) ① 시장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법적조치가 필요한 경우 전담대응팀을 통해 법적 대응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② 전담대응팀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12조(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과 민원인 간의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특이민원 근절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특이민원 상황의 신속한 대응 및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하여 관할 경찰서,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동두천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의원: 임현숙 의원)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4. 2.

발 의 자 : 김승호,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 제정이유

- 동두천시 관내 일정 지역을 걷고 싶은 거리로 지정하여 깨끗하고 정돈된 가로환경과 문화적 특색이 어우러진 경관을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를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걷고 싶은 거리”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4조)
- 걷고 싶은 거리 지정 방법(안 제5조)
-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각종 사업 등(안 제6조)

- 주민협의체의 구성(안 제7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안 제8조, 제9조)
- 위원회의 회의(안 제10조)
- 사업의 평가(안 제11조)

제정조례안: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없음

관계법령발췌서: 해당없음

## 동두천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관내 일정 지역을 걷고 싶은 거리로 지정하여 깨끗하고 정돈된 가로환경과 문화적 특색이 어우러진 경관을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를 조성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로”란 보도, 차도, 교차로와 이를 구성하는 가로시설물, 건축물 입면 등을 통틀어 일컫는다.
2. “거리”란 보행자 중심의 가로환경을 말한다.
3. “걷고 싶은 거리”란 시민이 도심 속 거리를 거닐면서 쾌적한 보행감과 경관 디자인을 통한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느끼며 동두천의 문화와 개성을 향유할 수 있도록 조성한 거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에서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와 개성을 느끼며 도심을 걸을 수 있도록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

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걷고 싶은 거리 구성에 대한 기본방향 및 단계별 목표
2. 보행환경 및 도심경관 실태조사
3. 지역별 거리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테마 발굴
4. 공공디자인 활용 및 경관 개선에 관한 사항
5.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방안
6. 걷고 싶은 거리 구성에 소요되는 비용의 조달 방안
7. 그 밖에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걷고 싶은 거리 지정) ① 시장은 시의 일정 지역 중 가로(街路) 등 보행로를 중심으로 제8조에 따른 동두천시 걷고 싶은 거리 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걷고 싶은 거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걷고 싶은 거리를 지정할 때에는 도시 이미지 향상의 필요성과 해당 지역의 문화적 특성 및 주변의 시설, 시민의 이용도, 역사성, 경제적 효과, 관광 활성화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등) ① 시장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행로 및 주변 도로의 확·포장 등 정비사업
2. 보행로 및 주변 지역의 녹지공간 조성 및 경관개선 등에 관한 사업
3. 공공조형물 및 시민 편의시설 설치 사업
4. 보행로 및 주변 도로의 입간판 정비 등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걷고 싶은 거리 및 그 주변 지역에서 개인이나 민간법인 또는 단체 등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주민협의체) ① 시장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정책 제안 및 협의를 위해 주민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 구성원은 거주지역별, 성별, 연령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 위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걷고 싶은 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걷고 싶은 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
2. 걷고 싶은 거리 조성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래전략담당관, 문화체육과장, 관광휴양과장, 교통행정과장, 공원녹지과장, 도로과장, 도시재생과장, 건축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동두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문화, 관광, 예술, 경관, 조경, 도시디자인 관련 전문가

다. 도시계획, 도시개발, 도시 숲 조성, 도로교통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평가)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이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의원: 김재수 의원)

의안 번호	
----------	--

발 의 연 월 일 : 2024. 2

발 의 자 : 김승호,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동두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동두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 결정에 따른 의정활동비 변경(안 제6조제1항)
  - 의정활동비 : 110만 원 → 150만 원

##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5

□ 참고사항: 붙임

-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동두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 결정사항

동두천시조례 제 호

##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900,000원”을 “1,200,000원”으로, “200,000원”을 “300,000원”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 ①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중 의정자료수집·연구비는 월 <u>900,000원</u> 으로 하고, 보조활동비는 월 <u>200,000원</u> 으로 한다. ② (생   략)	제6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 ① ----- ----- ----- <u>1,200,000원</u> ----- ----- <u>300,000원</u> ----- -----. ② (현행과 같음)

**□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4.] [대통령령 제33966호, 2023. 12. 14., 일부개정]

**제33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3. 12. 14.>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의정비심의회”라 한다)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3. 12. 14.>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제33조제1항제1호 관련)

구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시·도의회의원	월 1,500,000원 이내	월 500,000원 이내
시·군·자치구의회의원	월 1,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

**□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7. 31.] [경기도동두천시조례 제2375호, 2023. 7. 31., 일부개정]

경기도 동두천시(의회사무과), 031-860-2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동두천시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3.13, 2006.5.19, 2007.10.9, 2008.4.25, 2018.11.1.,2021. 12. 31.>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① 동두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는 의정자료수집과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매월 지급한다.<개정 2000.3.13, 2006.5.19, 2007.10.9, 2018. 11.1.>

②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동두천시의회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단, 최초임기 개시 또는 사직 등의 사유로 월 단위가 아닌 경우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00.3.13, 2006.5.19, 2018. 11.1.>

[전문개정 2021. 12. 31.]

**제3조 삭제** < 2006.5.19>

**제4조(여비지급)**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6.5.19>

② 삭제 <2006.5.19>

**제5조(여비의 종류)** ①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2006.5.19>

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항공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6.5.19>

**제6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 ①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중 의정자료수집·연구비는 월 900,000원으로 하고, 보조활동비는 월 200,000원으로 한다.

②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8.1.18, 2009.1.5, 2013. 12. 31, 2015. 12. 31. 2016.4.11.,2019.1.1.>

[전문개정 2007.11.30]

**제7조(여비지급기준)**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6(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에 따른다.<개정 2021. 12. 31.>

[전문개정 2019.1.1.]

**제8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신설 2018. 11. 1.><개정 2023. 7. 31.>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

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신설 2023. 7. 31.>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동두천시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신설 2023. 7. 31.>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동두천시의회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개정 2006.5.19,2021. 12. 31.>

부칙 <1991. 4. 10 조례 제646호>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집회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4. 18 조례 제6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1. 8 조례 제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9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4. 10. 5 조례 제7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8. 14 조례 제7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6. 2. 21 조례 제8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2. 18 조례 제8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3. 13 조례 제103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동두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일비"를 각각 "회기수당"으로 한다.

부칙 <2004. 2. 9 조례 제12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0. 17 조례 제12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5. 19 조례 제13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월정수당은 2006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 10. 9 조례 제13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1. 30 조례 제1394호>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 18 조례 제14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 4. 25 조례 제14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 5 조례 제14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2. 31 조례 제1700호>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 31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64호, 2016.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17호, 2018.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33호 2019.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 관련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 12. 31. 조례 제2260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30. 조례 제23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 관련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3. 7. 31. 조례 제23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4년~2026년 동두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 결정사항 알림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에 따라, 동두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주민공청회 및 2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붙임과 같이 2024년~2026년 동두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을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동두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사항 1부. 끝.



동두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수신자 동두천시장, 동두천시의회의장



서기 박기현 위원장 결재 2024. 1. 30.  
간두범

협조자 동두천시의회 -1 접수

우 11317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생연동) / www.ddc.go.kr

전화번호 031-860-2055 팩스번호 031-860-2662 / kihyun0602@korea.kr /

GTX-C 동두천 연장을 간절히 열망합니다.

## 동두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사항

□ 회의내용 : 2024년~2026년 동두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 결정

□ 회의결과

상정안건	의결사항		
	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2024년~2026년 동두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	월 1,500,000원	월 1,200,000원	월 300,000원



2024. 1. 30.

동두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 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4. 2. 15. 동두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24. 2. 21.

다. 상정일자 : 제327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 설명, 질의답변

제2차 본회의 심의

제3차 본회의 토론 및 의결

### 2. 제안 설명의 요지

#### 가. 제안 이유

- 「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시행(2023.4.1.) 이후 업무추진 과정 중 발생한 비효율과 불명확성을 제거하여 효율성 및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용어의 의미 구체화(안 제3조제1항)
  - “지원 결정 시”의미 명시
- 전입장려금 수령인 범위 정비(안 제4조제3항)
  - 동두천사랑카드 수령인의 범위 확대(직계가족→가족)
- 전입장려금 수령기간 설정(안 제4조제3항)
  - 동두천사랑카드 수령기간 신설(수령통지일로부터 1년)

○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 서식 수정(안 별지 제1호서식 앞면)

-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 서식 변경(연락처 추가)

○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수정(안 별지 제1호서식 뒷면)

-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변경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해 4월부터 시행한 인구증가시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인구증가시책 사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 음”

### 5. 토론요지

“없 음”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2024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4. 2. 15. 동두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24. 2. 21.

다. 상정일자 : 제327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 설명, 질의답변

제2차 본회의 심의

제3차 본회의 토론 및 의결

### 2. 제안 설명의 요지

#### 가. 제안 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업을 추가 반영한 2024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종합운동장 실내 테니스장 건립 건(문화체육과) : 취득
- 환경사업소 실내 테니스장 건립 건(문화체육과) : 취득
- 환경사업소 통합 사무실 건축 건(환경사업소) : 취득
- 학교법인 청룡재단 부지 매입(환매) 건(회계과) : 취득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계획 변경에 따른 2024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첫째, 종합운동장과 환경사업소 실내 테니스장 건립을 위한 건물 취득의 건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시민들의 체육복지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건축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 둘째, 환경사업소 통합 사무실 건립을 위한 건물 취득의 건은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근무자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마지막으로, 학교법인 청룡재단 부지 매입의 건은 2015년 3월 매매계약서 체결 당시 양 당사자 간의 합의된 특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매각대금에서 10%를 제외한 금액으로 환매하는 조건이며 이행 사항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 음”

#### 5. 토론요지

“없 음”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2024년도 중소기업 특례보증 수수료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4. 2. 15. 동두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24. 2. 21.

다. 상정일자 : 제327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 설명, 질의답변

제2차 본회의 심의

제3차 본회의 토론 및 의결

### 2. 제안 설명의 요지

#### 가. 제안 이유

- 중소기업 특례보증에 대한 보증 수수료를 지원하여 지역경제 위축을 완화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0,000천 원을 출연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지원대상 : 2024년 중소기업 특례보증 신청 업체
- 지원내용 : 신규 접수된 특례보증 수수료 1% 이내 지원(최초 1년분)  
※ 특례보증 수수료율 : 대출금의 1~2% 이내
- 지원용도 : 경영안정지원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동의안은 중소기업인의 자금 유통과 보증 수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일정 금액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물가상승과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인으로 하여금 자금조달에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 음”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동두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4. 2. 15. 동두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24. 2. 21.

다. 상정일자 : 제327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 설명, 질의답변

제2차 본회의 심의

제3차 본회의 토론 및 의결

### 2. 제안 설명의 요지

#### 가. 제안 이유

- 동두천시 지역먹거리 종합추진계획(2023~2027)에 의한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하고 먹거리 기본권보장을 실현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조례의 정의(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안 제4조)
- 먹거리종합계획 수립(안 제6조)
- 먹거리위원회 설치(안 제8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제정 조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 2와 3에 따라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과 바른 먹거리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 음”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4. 2. 15. 동두천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24. 2. 21.

다. 상정일자 : 제327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 설명, 질의답변

제2차 본회의 심의

제3차 본회의 토론 및 의결

### 2. 제안 설명의 요지

#### 가. 제안 이유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금을 재원으로 기탁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장학생을 선발하는 지정기탁사업을 기금의 용도에 추가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기금 조성 재원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 포함 (안 제3조제3호)
- 기금의 용도에 지정기탁에 따른 장학사업 포함 (안 제4조제1항 제5호)
- 지정기탁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의2)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기금의 재원으로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의 이자수입 이외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기부금품을 추가로 규정하여 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을 확대하였고, 기탁자의 기부금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애향장학생 선발 기준과 다르게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장학생 선발방법을 다양화

하였습니다. 개정사항에 대하여는 상위법과 관계 법령 검토 결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 음”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동두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4. 2. 15. 황주룡 의원 외 6명 제출

나. 회부일자 : 2024. 2. 21.

다. 상정일자 : 제327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 설명, 질의답변

제2차 본회의 심의

제3차 본회의 토론 및 의결

### 2. 제안 설명의 요지

#### 가. 제안 이유

-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 특이민원 대응 및 계획 수립(안 제5조)
- 신고 및 보호 의무(안 제6조)
- 지원 사항 및 지원 방법(안 제7조~제8조)

- 지원신청 및 불이익 조치 금지(안 제9조)
- 안전한 근무 환경 마련 등(안 제10조)
-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등(안 제11조)
- 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12조~제13조)
- 시행규칙(안 제14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개정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 음”

### 5. 토론요지

“없 음”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동두천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4. 2. 15. 임현숙 의원 외 6명 제출

나. 회부일자 : 2024. 2. 21.

다. 상정일자 : 제327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 설명, 질의답변

제2차 본회의 심의

제3차 본회의 토론 및 의결

### 2. 제안 설명의 요지

#### 가. 제안 이유

- 동두천시 관내 일정 지역을 걷고 싶은 거리로 지정하여 깨끗하고 정돈된 가로환경과 문화적 특색이 어우러진 경관을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를 조성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걷고 싶은 거리”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4조)
- 걷고 싶은 거리 지정 방법(안 제5조)
-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각종 사업 등(안 제6조)
- 주민협의체의 구성(안 제7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안 제8조, 제9조)
- 위원회의 회의(안 제10조)
- 사업의 평가(안 제11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 누구나 도심 속 거리를 거닐면서 쾌적한 보행감과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느끼며 동두천의 문화와 개성을 향유할 수 있도록 이른바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자동차 중심의 도시에서 이제는 사람과 자연, 문화 중심의 보행친화 도시로 전환을 촉구하는 도시 비전을 담고 있고, 시민들에게 보행의 즐거움을 제공한다는 면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 상위법과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 음”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수정안 별첨

##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4. 2. 15. 김재수 의원 외 6명 제출

나. 회부일자 : 2024. 2. 21.

다. 상정일자 : 제327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 설명, 질의답변  
제2차 본회의 심의  
제3차 본회의 토론 및 의결

### 2. 제안 설명의 요지

#### 가. 제안 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동두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동두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 결정에 따른 의정활동비 변경 (안 제6조제1항)  
- 의정활동비 : 110만 원 → 150만 원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가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상한액이 변경됨에 따라 동두천시의회위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해당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동두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기타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 음”

### 5. 토론요지

“없 음”

### 6. 심사결과

“원안가결”